

제주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6776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배성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현

피 고 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500,000원, 원고 B에게 62,500,000원, 원고 C에게 64,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 A에게 79,687,840원과 그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갑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귀포시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분양사업 시행사로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호텔 중 개별 호실을 분양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을 2017. 9. 30.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입주예정일을 지정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B,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8가소11653호로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여 2018. 10. 2. 피고가 원고 B, C에게 계약금 각 1,500만 원을 2018. 11. 16.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 A이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9. 2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분양대상	분양일	분양대금	지급한 계약금	지급한 중도금
A	F호	2016. 2. 1.	1억 3,900만 원	1,500만 원	6,350만 원
B	G호	2016년 8월	1억 3,575만 원	1,500만 원	6,250만 원
C	H호	2016. 11. 26.	1억 4,419만 원	1,500만 원	6,450만 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A에게 7,85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 중도금 6,350만 원), 원고 B에게 6,250만 원, 원고 C에게 6,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A은 국세환급금 1,187,840원도 원상회복으로서 지급을 구하나, 갑3, 4호증만으로는 원고 A이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1,187,8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상회복의 근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 B, C의 청구는 모두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송현경